

[]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지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①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③ 피해 정보 관련	1. 피해주택 소재지				
	2. 임차보증금		원		
	3.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원		
	4.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		원		
④ 피해자 유형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중 신탁사기피해자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가 아닌 자)				
	[] 신탁사기피해자 [] 무권계약 피해자				
⑤ 신청 구분	[] 최소지원금 [] 선지급금				
	* 선지급금은 최소보장피해자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0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지급요청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9제1항 및 제25조의10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등의 산정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결정문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주민등록표 초본 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말합니다) 마.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바. 신탁원부(신탁사기피해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 임대인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해당 서류(변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차.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 중 주소는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②란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③-1호란은 소재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동·층·호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③-2호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을 정확히 기재하고, 금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합니다.
- ③-3호란은 경매 또는 공매 등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즉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배당 또는 배분을 받았거나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액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 ③-4호란은 임대인등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일체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변제받은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④란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을 적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선지급금 신청대상(신탁사기피해자, 무권계약 피해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유형별로 표기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신탁사기피해자는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된 주택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 ⑤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곳에만 기재 또는 표시합니다.
- ⑥란은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를 기재합니다.(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기재)

처리절차

